

보도시점 2023. 6. 26.(월) 11:00
6. 27.(화) 조간

배포 2023. 6. 26.(월) 09:00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신청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 (감액 5%)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감액 10%) 이외 14개 준수사항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공익직불제 100% 받는 법!
2. 준수사항 실천방법 알아보기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경미	(054-429-7800)
		담당자	사무관	노미숙	(054-429-7807)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
건강한 대한민국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준수사항~ 다 같이 실천해 보요!

- ①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요.
- ② **농약·비료·기타 유해물질**은 허용 기준에 맞게 사용해요.
- ③ **퇴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해요.
- ④ **생태교란** 생물은 키우지 않고, **방제대상** 병해충은 **신고**해요.

영농작업
하실때
주의해 주세요~



- ⑤ 농작업 내역은 **영농일지**에 기록해요.
- ⑥ 영농 **폐기물**은 소각·방치하지 말고 **마을공동수거함**에 버려요.
- ⑦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농약·가축분뇨**는 버리지 말아요.
-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요.

영농작업
끝난뒤
에도
잊으시면 안돼요~



- ⑨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요.
- ⑩ 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해요.
- ⑪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신청** 해요.
- ⑫ **하천,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받고 사용해요.

평소
에도
잊지않고
실천해 주세요~



부정수급 신고 ▶ 지자체 또는 농관원 1644-8778 내선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 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합니다.
-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논농업) 농지 주변 용수로·배수로 등을 잘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연도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미유지로 인한 감액



폐경



경계 미설치



농지의 하우스 주거지 사용



폐기물 적치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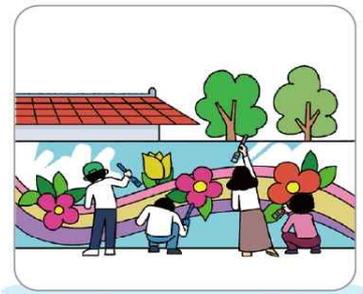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마을 단위 자치회(이장 등)를 중심으로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예)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



마을 대청소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가꾸기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수기, 온라인 등 농업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 수기 작성은 본 안내서 26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온라인 영농일지는 '농업온 (www.agrion.kr)'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가 있으신 경우 기존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

총 감액(지급제한) 비율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복수 위반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됩니다.

반복 위반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가 감액됩니다. 3회 이후엔 40%가 감액됩니다.

예시

2022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3년 농지의 형상을 또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